

혈액공급차량의 형태·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(제12조의2관련)

1. 형태 및 표시

- 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·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로서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을 것
- 나. 바탕색은 백색으로 하며, 전·후·좌·우면중 2면 이상에 녹색으로 ‘혈액공급차량’이라는 표시를 할 것
- 다. 좌·우면중 1면 이상에 혈액공급차량을 운영하는 혈액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것

2. 내부장치

- 가. 삭제 <2009.1.30>
- 나.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용기와 냉매제를 갖출 것
- 다. 혈액제제 보존용기 내의 유지온도를 기록하는 장치

3. 그 밖의 기준

- 혈액공급차량 운행일지를 구비할 것